가야왕도 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2020. 11. 7. 시행)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준수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명)	(수도권) 40명 미만 (타권역) 10명 미만 (강원·제주는 4명 미만)	(수도권) 40명 이상 (타권역) 10명 이상 (강원·제주는 4명 이상)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		
	(전체)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r>1), 집단감염 발생 현황 (2.5~3단계)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 분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 공연장 ·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워터파크·놀이공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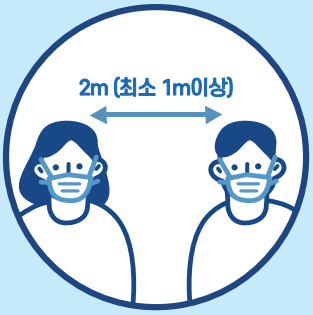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1. 다중이용시설					
중점 관리시설 (9종)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 관리시설 (14종)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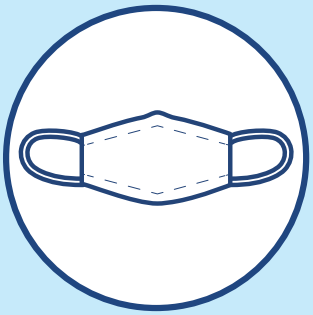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거리를
확 띄워요!



어디서나
확 써줘요!



비누로
확 씻어요!



옷소매로
확 막아요!



밀폐·밀집·밀접
확 피해요!



감염병 궁금할 땐
전화해요!

김 해 시

2020.09.30